



잠깐!



아프리카돼지열병, 구제역,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
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

해외여행 후 입국시
육류 및 햄·소시지·육포와 같은
관련 제품은 반입이 제한되며,



부득이하게 소지하신 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체크하고
공항·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◆ 해외직구 등 국제우편·특송의 경우에도 반입이 제한됩니다.

**휴대한 동물검역 대상물품을
신고하지 않을 경우**

최고 1,000만원의 과태료 부과

※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, 체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◆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: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
· 1회(500만원) → 2회(750만원) → **3회(1,000만원)**
- ◆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 이외 제품 및 기타 국가
· 1회(100만원) → 2회(300만원) → **3회(500만원)**



검역 대상 (반입제한 품목)

- 동물 : 개, 고양이, 애완동물 등
- 육류 및 육류가공품 :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소시지, 햄, 육포, 통조림, 삶은 고기 등
- 동물의 생산품 : 녹용, 뼈, 깃털 등
- 유가공품 : 우유, 치즈, 버터 등
- 알 및 알가공품 : 달걀, 조류알, 난백, 난분 등
- 애완동물사료, 간식류 및 영양제 등



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안내

-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출국 신고와 입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출국신고 스마트폰 모바일웹으로 간편하게(eminwon.qia.go.kr/m)

입국신고 도착하는 공항·항만에 있는 검역본부 사무실 방문



대표전화 | 출입국 신고 문의 1670-2870

축산 관계자의 범위

- 동물약품 제조·판매자 및 고용인
- 사료 제조·판매자 및 고용인
- 가축분뇨를 수집·운반하는 자
- 원유를 수집·운반하는 자
- 가축시장 및 도축장의 종사자
-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*
-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
- 수의사·가축방역사·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자

*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(사실상 거소를 함께하는 가족 포함)



검역관련 ✈ 주요 공항·항만 문의처

인천공항 032-740-2661
032-740-2021

김해공항 051-971-4991

대구공항 053-984-5096

청주공항 043-263-4218

김포공항 02-2664-0601

무안공항 062-975-6030

제주공항 064-746-0761

인천항 032-722-8237~9

부산항 051-600-0424

평택항 031-684-6397~9

양양공항

동해항 033-635-9125

속초항

군산항 063-460-9430

제주항 064-728-5350